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3차 토론회>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발표 : 박 경 석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토론 : 허 영 춘 (유가족대책위)

이 창 수 (새사회연대)

때 : 2004년 11월 11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기 의문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박경석[1]

과거청산과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

역사는 수많은 사회적 기억에 대한 투쟁의 성과물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시대에 따라 여러 힘의 관계를 통해 특정한 인상(image)으로 변화하고 재해석됨으로써 기억할만한 가치를 갖게 된다. 역사적으로 재구성된 과거의 기억은 시대를 따라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과거는 단지 활자와 기록을 통해 만나는 차가운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뜨거운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 독재정권이라는 시기를 겪으며 한국 사회는 굴절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권 주체들에 의해 과거사실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왜곡되고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한 편에서는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소모적인 국가 정체성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나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용인하고, 그리워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국가폭력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역사적 기억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많은 방해에 부딪치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제 식민잔재의 청산과 부역자들의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의 활동은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저항으로 좌절되었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낳은 한국전쟁의 비극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침묵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정권에 맞

1)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전문위원, (前)위클리솔 편집장

서 투쟁하다가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죽음 또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폄하되고 왜곡되어 버렸다.

이는 잘못된 과거에 의해 탄생하고 그 기반 위에 정권을 유지해 온 부패한 세력들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어 과거를 바로 세우고 역사적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된 과거의 지배 구조 속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권력을 향유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은폐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고문과 투옥, 테러와 폭력에 희생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노력은 그들과의 지난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피와 땀으로 힘겹게 만들어온 역사적 노력의 성과이다.

그러므로 과거청산이라는 작업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교정하는 학술적 차원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정신의 발현인 것이다. 또한 잘못된 역사는 응분의 심판을 받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역사적 선례를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냄으로써 과거의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의문사를 밝혀내는 일은 단지 민원인들의 쌓인 원을 해소하고 경제적 보상을 하는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규정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작업인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약 1년간에 걸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정리해 보고 진상규명의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본 글이다. 이 글은 필자가 2기 대통령보고를 위해 정리했던 위원회의 활동성과와 2기 위원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면서 경험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한계성을 정리해 놓은 김희수 1상임위원의 글을 모아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글이다. 따라서 내용 중 일부는 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발표될 위원회 보고서와 이 글 간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2기위원회의 공식보고서가 이 글의 입장에 우선함을 밝힌다.

1. 활동성과

1기위원회는 조사권한 부족과 관계기관의 비협조, 조사시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기위원회 역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컴퓨터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거나 모의실험을 해보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외국의 법의학·총기 감정 전문가들을 찾아 직접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반인권적인 고문이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실제 상황을 연출해 보았다.

그 결과 새롭고 중대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기관은 물론 문교부나 일선 대학, 교정기관, 심지어 재소자나 일반 사병들까지 폭력과 인권침해에 동원하는 체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까지 불법적인 행위에 끌어들인 것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1) 군, 부재자 투표 관련 사망사건 은폐 조작

위원회는 198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군사독재정권이 군부통치를 연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에 보안사가 개입하여 이를 은폐·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군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화근이 되어 구타를 당하여 사망한 정연관 사건이 그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노태우 후보에게 권력을 이양하려 하였으나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호헌철폐·직선제 개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굴복한 정권은 6월 29일 마침내 직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고,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는 정반대로 선거는 집권여당에 의한 불법과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러졌다. 그 과정에서 1987년 12월 4일 군 부재자투표 때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중이던 정연관 상병이 구타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방부와 보안사는 정연관의 죽음이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교육중 발생한 단순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사건을 축소하였다. 헌병대는 수사결과 이 사건을 '군 부재자투표와 관련 없는 단순구타 사고'로 내용을 조작하였다. 위원회는 다수 참고인에게서 "당시 중대장이 국회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에게 헌병대 수사기록을 보여주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압박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결국 보안사와 군이 정연관 사망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질 경우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무리한 조작과 은폐를 자행하였음이 드러났다. 아쉬운 것은 조사과정에서 군의 추가적인 조작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사시한으로 인하여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2) 반인륜적 사상전향 공작의 실상

위원회는 유신정권 시기 교도소내 비전향 장기수와 좌익사범에 대한 사상전향 공작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하였고, 좌익사범과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고문을 가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1973년 8월 6일 대전, 대구, 광주, 전주교도소에는 전향공작전담반이 구성되었다. 전향공작 전담반은 형식적으로 법무부 산하로 운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보부가 주도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제출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 따르면 '전향심사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시키고 내용을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가 입수 분석한 좌익재소자들의 전향 관련 기록들은 어김없이 중앙정보부 지부와 협의하라는 교도소장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도소내에 구성된 전향공작 전담반에는 폭력사범 및 일반 재소자들이 참여하여 온갖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향을 강요하였다. 전향공작은 좌익사범이나 비전향장기수 외에도 경미한 반공법 위반자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의 경우 활동 초기엔 대화를 통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자 폭행고문을 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고문은 조직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이른바 2 대 1 공작은 폭력사범 2명이 들어 있는 사방에 좌익수 1명을 집어넣어 가혹행위를 하는 방

식을 말한다. 바늘 수백 개가 박힌 침목으로 온몸을 찌르고, 물고문·고추가루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가하였다. 여기에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제한하고, 병치료를 해주지 않으며, 가족을 동원한 심리적 회유가 더해졌다. 생명권 박탈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단식을 통해 항거하였으나, 이에 대해 살인적인 강제급식 방법이 동원되었다. 강제급식은 주로 교도소 내 격리사동에서 진행되었는데, 고무호스를 목구멍을 통해 위장까지 집어넣고 강제로 소금물에 가까운 죽물을 억지로 부어넣음으로써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원회는 1974년 대전교도소 수감중 사망한 좌익사범 최석기, 비전향장기수 박융서, 대구교도소에서 1976년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손윤규가 바로 전향공작 과정에서 이러한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학문의 전당 대학, 강제징집에 적극 가담

2기위원회는 김두황, 최온순 등 강제징집 관련 사망자의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대학당국의 학생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4백47명에 대한 강제징집 조치가 이루어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20여개 대학으로부터 약 6만쪽 분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지 못하였는데, 특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직접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자료제출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진상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권위주의 통치시절, 청와대, 국방부, 문교부, 병무청, 경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진리와 양심, 도덕 등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당국조차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었다.

강제징집 조치는 1970년대 초반 유신정권부터 시작되었으나, 19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에 의해 학원통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수용되었다. 강제징집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이들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대시킨 것을 말한다.

1980년 당시에는 청와대와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국방부 등의 고위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5인 위원회'가 학원통제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문제학생'들을 처리하였는데 학생이 기소상태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하한 뒤

입대시켰고, 치안본부 대공분실과 안기부 등에서는 연행된 상태에서 바로 강제징집 조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당국은 단순한 협조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시국사건 관련 학생들이 강제징집 될 수 있도록 곧바로 학사징계 조치를 내리고, 집회·시위에 연루된 학생들의 성향을 꼼꼼히 분류해 징계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던 것이다.

문교부는 당시 학생처 강화, '문제학생'의 지도·평가, 집회·시위 차단 등을 뼈대로 하는 '학원대책사업추진계획서'를 각 대학에 내려 보냈다. 특히 교수 면담이나 학부모 상담으로도 선도되지 않는 '지도불능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또는 직권휴학 조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입영대상자는 휴학 즉시 입영 조치, 비입영대상자는 학교 관계인이 협조지도'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은 우선 학칙에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총장이 직접 휴학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직권휴학 조처' 조항을 학칙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1년에 두 차례씩 전국대학 총·학장 회의를 열어 문제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보고하여 정부 방침을 전달받았다. 또한 학생처를 중심으로 일일상황 보고와 문제학생 동태파악 등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안기부와 보안사, 경찰, 문교부 직원 등 이른바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위한 운영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4) 정부합동대책반의 조직적 노동운동 탄압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 9월경 정부는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 가입 노동조합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탈퇴유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 노동부, 안기부, 치안본부는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를 접촉하여 설득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등 조직적인 탄압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민주노조 추진 핵심인물에 대한 내사를 통해 제3자개입금지 등의 법을 적용하여 적기에 사법처리함으로써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 아래 노동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협의회 등 법외노조 추진세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보고 '심리전' 차원에서 교육·홍보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조합비를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노동대책은 지금까지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로 남아 최근 배달호, 김주익 등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살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위원회는 위 문서의 노동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91년 의문사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안기부의 전노협, 대기업노조연대회의 탈퇴회유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시청이 한진중공업에 요구한 업무조사가 사실은 안기부와 노동부의 업무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박창수를 구속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악용되었다. 위원회는 또한 박창수가 사고현장인 병원 옥상으로 갈 때 동행자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확보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5) '망원' 활용한 보안사의 사찰활동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공안기관과 대학당국에 의해 강제징집된 병사들은 보안사의 불법적인 감시와 고문·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위원회는 1983년 군에서 의문사한 최온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 초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전방사단에 배치된 강제징집자(특수학적 변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병들을 망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안사는 강제징집된 병사들에게 강압적인 정신교육과 고문, 가혹행위 등을 하면서 프락치활동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소속부대의 선임병이나 분대장 등을 돈이나 휴가로 회유하여 강제징집자들의 서신이나 서적 등을 검열하고 동향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보안사 간부는 당시 봉급의 4분의 1을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고, 특히 '망원'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2만원씩 돈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제징집자에 대한 감시는 보안사뿐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가 입수한 당시 사단 지휘관의 지휘서신에는 '특수학적변동자 선도'에 관한 내용들이 실려 있고, 이를 지휘한 연대장의 수첩에도 일선 대대급까지 군부대가 운동권 출신 사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 과정에서 최온순을 비롯하여 강제로 징집된 병사들은 보안사와 일선 지휘부까지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문과 프락치공작을 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 결국 사병이 동료사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깊은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6) 안기부의 '대학 길들이기' 공작

위원회는 이철규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관련자의 「업무일지」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안기부가 조선대 비운동권 학생들이 이돈명 총장을 고발하도록 공작을 하여 진보적인 성향의 이돈명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돈명 총장 외에도 조선대의 진보적인 교수들에 대한 퇴진 공작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의 「업무일지」 6월 21일자에는 '이돈명 총장 취임후 조선대가 혁명기지화 되었으므로 이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의 성분과 추천, 선출 배경을 조사할 것'과 '반대파인 박철웅 전 총장과 잔존세력의 고소, 고발, 폭로작전이 가능한지, 그 공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의 안기부 차장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또 다른 첩보보고 문서에는 '그동안 유보상태인 이돈명 총장의 해임 문제를 기소 분위기와 결부, 종결 처리하는 등 적극 대처토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안기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길들이기'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기부는 1989년 4월 조선대학의 교지인 『민주조선』을 수사하였는데, 이는 이돈명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원회는 『민주조선』에 대한 수사가 안기부 본부 차원에서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치안본부, 문교부, 보안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단위의 대책회의 속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사인규명

1975년 8월 17일 야당 정치인 장준하의 시신이 포천 약사봉 밑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그가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큰 외상과 골절이 없는 사체의 상태는 곧 갖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검안소견서가 공개되면서, 장준하의 사체가 기존에 알려진 장소에서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이 장준하 사건의 중요한 의문점이었고, 이에 대한 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체 및 지형 모델링, 이를 활용한 추락사고의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먼저 추락지점으로 알려진 벼랑을 3차원으로 실제에 가깝게 구성하고, 추락시 충격량과 충격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상 인체모델을 구성하여 12가지 자세로 추락시켜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자세마다 인체가 받는 충격량과 상해부위를 확인하고, 충격량에 따른 상해정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초 장준하의 사체사진 및 검안소견서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경우 두부에 3회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11가지 경우는 가슴에 찰과상, 10가지 경우는 가슴에 골절, 9가지 경우는 둔부, 팔, 다리에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장준하의 사체가 검안소견과는 달리 추락지점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원회는 과학적 조사기법인 컴퓨터 추락시뮬레이션 실험결과에 의하여 장준하의 추락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 사인규명 작업은 30년이 지난 오래된 사건을 단지 관련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조사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 고문범죄 재현과 피해자 공개증언

고문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고문은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를 색출·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분단과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군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삼았다. 특히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화 세력에게 가혹한 폭력과 고문을 가하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고문이나 폭행과 같은 과거 일제와 군사독재의 망령은 크게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폭력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종원 사건의 경우 1985년경 이른바 서울대 '민추위' 사건에 따른 고문수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질 때 생긴 대표적인 의문사이다. 우종원은 1984년 10월경부터 '민추위' 산하 홍보위원회의 대외유인물책으로 활동하다가 수배되어 1985년 10월 12일 충북 영동의 한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민추위' 사건은 서울대 학생운동써클인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깃발」이라는 유인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후에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에 대한 고문과 박종철 고문치사 등으로 확대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2기위원회는 2004년 4월 13일, 우종원 사건 등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악명 높은 일제잔재인 고문수사의 실체를 밝혀 고문수사 방지 와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당시의 고문수사 상황을 재현하였

다. 고문수사의 재현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칠성판을 이용한 물고문, 통닭구이, 집단구타, 심리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행위 재현 등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2. 한계

1) 법령상의 한계

(1) 조사대상에서의 한계

1기 의문사위원회에서는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한정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국가폭력이 개입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성 유무를 떠나 당연히 국가가 이를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문사특별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성'으로 이를 한정 짓고 있어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기 의문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동일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개정된 의문사특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조사미진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불능 결정된 사건, 기각 결정된 사건 중 진정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으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재적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 사건'만을 조사 할 수 있도록 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 사건이나 의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조차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활동하였다는 근원적 한계가 있었음은 향후 과거청산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2) 조사 시한에서의 한계

의문사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2기 의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당시 결원된 위원의 임명이 완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기한은 최장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출범기획단을 만들어 사전에 준비 작업을 충실히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선발 및 교육, 조사기록 분석, 조사계획 수립, 조사진행 중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등의 여러 절차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조사

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은 약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0~3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문사건 들을 조사관 1~2명이 8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항도 향후 과거청산을 논할 때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조사 권한에서의 한계

의문사특별법은 1기 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지적되었듯이 처음부터 조사권한상으로 본질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운 조건으로 구성된 법률이었다. 의문사특별법은 임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동행명령권이 있었으나 단지 과태료 부과 정도의 미약한 힘으로는 관련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게다가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의 개입 여부가 의문사 사건들의 대다수 핵심적인 사항이었음에도 정작 국정원, 기무사 등 관련 국가 기관들이 비협조를 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여 진상 파악을 하는 데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진상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소지인이 임의 제출하지 않는 이상 진상 파악에 필요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조사관으로 활용할 수는 있었으나 당사자가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여도 이를 제제할 수가 없었다. 향후 과거청산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이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4) 조직 구성 및 활동에서의 한계

2기 의문사위원회는 1기 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조건의 조사관과 예산을 갖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예산상 행정자치부의 예비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조사관들이 조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탐문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등도 조사관 개인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30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조사관 1~2명으로 조사를 한다는 조차 무리한 상황이었지만, 민간 조사관 중에서도 능력이나 자

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향후 과거 청산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고려되어야 할 점일 것이다.

2) 본질상의 한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들은 사건 자체에서도 본질적인 한계가 나타났다. 오랜 세월이 흘러 목격자 등을 찾는 것이 어렵고 설사 어렵게 목격자를 찾아도 그 기억이 희미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현장에서의 증거도 이미 없어져 버리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았으며 시체는 이미 처리되어 증거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사건자체에서도 진상 파악을 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은 만일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진상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3) 관계기관 비협조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진상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서 관계 기관의 비협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조사권한의 미흡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사 권한의 유무를 떠나서도 관련 기관들이 과거 청산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고도 보인다.

의문사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진술과 근거 자료 등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여도 정보기관들은 자의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협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을 되풀이 하고, 심지어는 협조하기로 약속한 사항까지도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 없이 태도를 돌변해 거부하는 등 국가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한계는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으며, 가령 기무사는 위원회의 강제징집, 녹화 사업과 관련한 실지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는 보안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든가 당시 사령관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전량 파기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허원근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무사가 보관중인 마이크로필름 자료 등을 협조하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돌연 협조를 거부하는가 하면, 국방부 역시 김두황 사건과 관련하여 함께 근무한 사람들 명단조차 넘

겨주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채 핵심 참고인 자료를 넘겨주어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국정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장준하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 운운하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조사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야 겨우 일부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계속되는 비협조 속에서 위원회가 실지 조사를 결정하고 국정원을 방문하였으나 국정원은 문서체계상 같은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발생된 자료와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가사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열람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공언해온 말과 일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관계기관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결국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참여정부의 기본정신과도 배치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과거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3. 맺음 말

일제 강점 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1925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천황에 충성하는 충성 서약을 받고자 사상전향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그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정작 일본에서도 종전과 함께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1998년 사상전향제 폐지, 2003년 준법서약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며 옥죄어 왔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진정한 과거 청산 없이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청산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버림받고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고, 6·2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하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조작된 사건들의 많은 실상이 아직도 어둠속 베일에 잠겨있고,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식들의 부모는 잠을 재대로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찌 단순한 과거의 문제라고만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밝혀진 진실위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용서하고 사면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래를 말할 수 있고,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방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 과거청산을 해보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시도된 어설픈 진상 규명이지만 의문사위원회가 이러한 과거 청산의 기조와 방향 속에서 일해 왔고, 포괄적인 과거청산으로 나가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 그 소임을 다하였다는 점은 후일의 귀감이 될 것이다.